

#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개

##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령안

### 1. 개정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2.5.) 제7조에 따라 유효기한을 연장을 위해 일부개정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2.5.) 제7조에 따라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만료일(2021.5.30.) 도래에 따라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개 훈령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 일부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일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개

##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령안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의 개정)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이 훈령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u>2021년 5월 30일</u>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5조(유효기간) ----- ----- ----- ----- ----- ----- <u>2024년</u> <u>5월 30일</u> ----- -----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u>2021년 5월 30일</u>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3조(유효기간) ----- ----- ----- ----- ----- ----- <u>2024</u> <u>년 5월 30일</u> ----- -----